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지 방 자 치 단 체 를 당 사 자 로 하 는
계 약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계약 관련 합리적인 규제 개선으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를 완화하며 공사계약의 계약보증률을 하향 조정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개선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기관 확대(안 제37조제3항 개정)

- 1)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이며, 교육부로부터 검사·감독을 받고 있어 공공성이 확보된 기관이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체결을 회피하거나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 임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가능성이 낮음임
- 2)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등을 입찰보증금 등 면제 대상 기관에 추가
- 3) 교육시설 안정 및 유지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모두에게 효율성 강화

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 하향 조정(안 제51조제1항 개정)

- 1)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보증금률을 물품·용역 등의 계약보다 높게 적용하므로 타 계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하향 조정할 필요
- 2)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며 경기 침체 극복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5% 이상 수준으로 하향 조정 가능토록 함
- 3) 중소기업업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 방식 개선(안 제54조제2항 신설)

- 1) 계약 중도 포기시,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되어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므로 일부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은 세입조치에서 제외할 필요
- 2)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용역의 일부 완성 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서 제외
- 3) 중소기업들의 부담완화와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개선(안 제92조제10항 개정)

- 1) 조합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회원사가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없는 조합의 활동까지 제한하게 되어 개선 필요
- 2)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부정당업자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

- 3)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입찰참가 제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동 지원
마. 지방계약전문기관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완화(안 별표 개정)
- 1) 지방계약전문기관에 대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과도한 가중처분의 누적에 따른 권익 침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
 - 2)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3) 지방계약전문기관의 행정제재 처분시 과도한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제3항 제5호 아목에서 “시·도의 연구원”을 “연구원”으로 하고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제51조 제1항제1호에서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1천분의 75를 100분의 5”로 한다.

제5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이행하기로 한 계약의 경우 :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제54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현행 제5항은 삭제한다.

제92조 제10항 단서조항에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하며 다음 각 호를 신설한다.

1.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2.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연합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회장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2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7조(입찰보증금) ①, ② (생략)	제37조(입찰보증금)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입찰참가자에 대해서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 ----- -----
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 -----
다.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 ----- ----- -----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 ----- -----
마.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 ----- -----
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 ----- -----
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 -----
아.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 ----- ----- ----- ----- <u>연구원</u>
자.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 ----- -----
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 ----- ----- -----

[illegible]

6. ~ 7. (현행과 같음)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① (현행과 같음)

1. ----- 100분

의 10 -----

100

부의 5 -----.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54조(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① (현
행과 같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
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1.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

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하
다)의 경우로서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인수
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기성부분 또는 기
납부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
치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
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이행하
기로 한 계약의 경우 : 당초의 계
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
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제외하
고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할 때 그 계약보증금은 기성(既成)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相計)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⑤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 서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분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삭 제>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⑨ (생략) ⑩ 제3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를 입찰에 관여하게 한 사용자에 대해서도 제8항 및 제9항을 적용한다. 다만,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로서 해당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 -----, 다음 각 호 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대표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로서 입

<신 설>	<u>참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 입찰</u>
<신 설>	<u>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u>
	<u>2.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표자가</u>
	<u>「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u>
	<u>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협동조합연합</u>
	<u>회 및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회</u>
	<u>장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해당 중소기</u>
	<u>업협동조합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u>
	<u>유와 관련 없는 경우</u>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783

